

팁스(TIPS)

- 투자·보육 운영방안 -

**TECH
INCUBATOR
PROGRAM FOR
STARTUP**

Contents

1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

2 투자의 절차

3 투자의 기본원칙

4 투자의 세부내용



1.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



■ 선정평가 절차

01

창업기업 추천

- 창업기업 추천서류 이메일 제출마감(운영사→운영기관)
- 추천서류 : 추천공문 및 현황, 투자계약서, 투자검토보고서, 사업자등록증, 투자금 정보(EXCEL)

02

SMTECH 과제신청

- SMTECH 온라인 과제신청(창업기업→SMTECH)
- 추천서류 일체 제출(업로드)

03

사전 검토

-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
- 검토 결과에 따라 요건탈락 통보

04

투자적절성
검증위원회

- 투자계약서(확약서), 투자검토보고서, 주주간계약서(해당사)를 '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'에 따라 검토

05

서면평가

- 창업기업의 역량 및 기술의 우수성, 운영사 지원계획, 글로벌 진출전략 등 검토
-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여부 결정

■ 선정평가 절차

06

서면평가 결과통보

- 글로벌진출전략 부재, 항목별 과락제에 따른 대면평가 제외대상 통보
-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,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

07

대면평가

- 서면평가 결과에 의한 보완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
- **시장성**은 '운영사 대표 또는 심사역', **기술성**은 '창업기업 과제책임자' 발표

08

최종결과 통보

- 서면평가 40% + 대면평가 60% + 가점 최대 3점으로 종합평점 산정
-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및 최종선정과제 통보

09

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
재심의

- 선정 창업기업 중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 체결 필요 통보 및 해당 내용 검토

10

협약체결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서류 제출(주관연구개발기관→SMTECH)
- 운영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협약 체결
- * 주관연구개발기관(창업기업), 전문기관

■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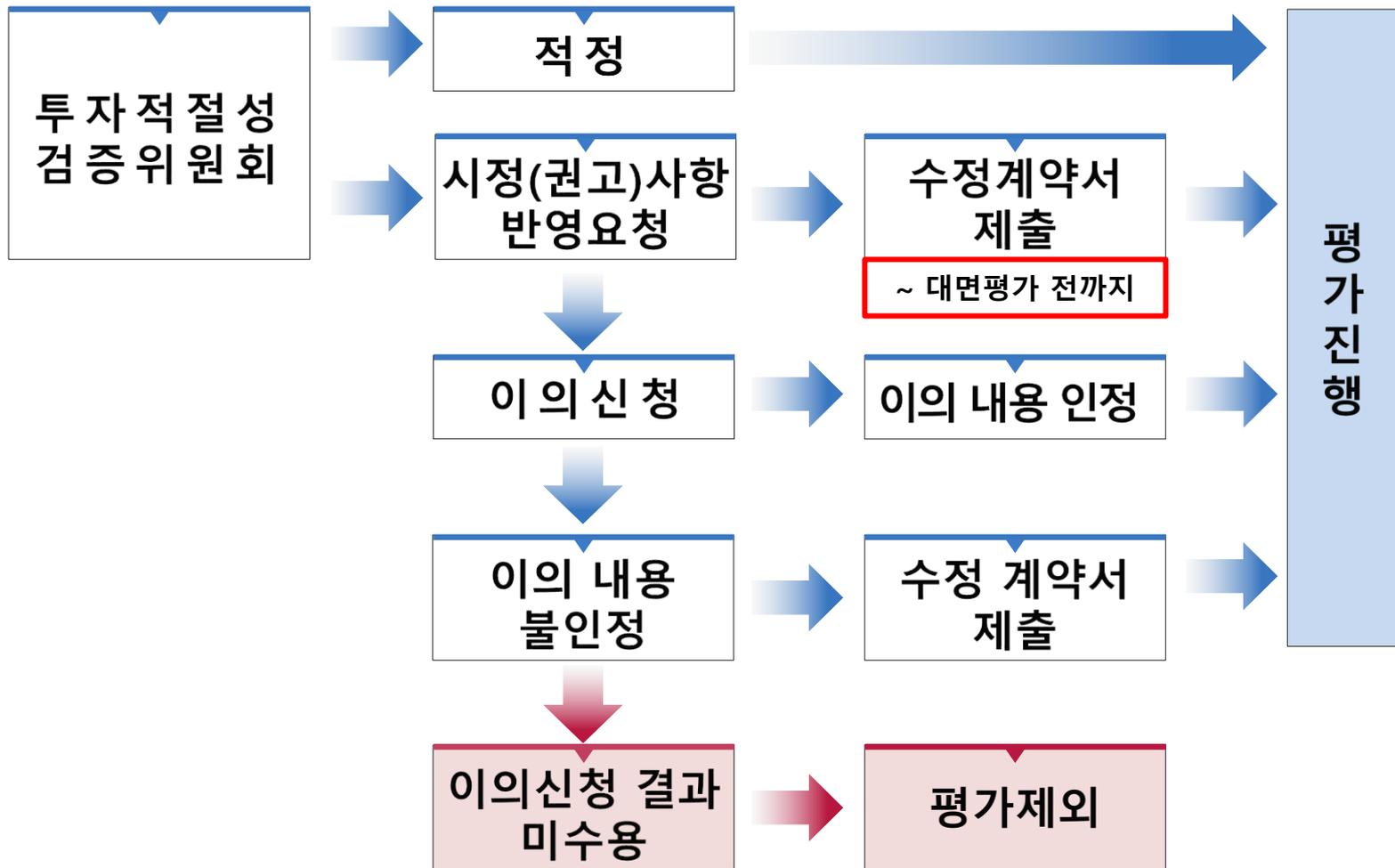
✓ 목적

- 운영사의 적절한 지분율 확보, 투자 리스크 최소화
- 민간투자가 생소한 창업기업의 권한 보호

✓ 개요

- 투자검토보고서, 투자계약서(확약서),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, 주주간 계약서(해당시)를
‘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’에 따라 검토
 - * 투자확약서,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의 경우 팁스 양식 준수 필수
- 위원별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에 대한 적합 여부 결과 통보
 - * 평가결과는 ‘적정’, ‘시정’, ‘권고’ 로 구분
- ‘시정’사항에 대한 수정 투자계약서를 대면평가 전까지 제출 필요
 - * 수정 투자계약서는 확약서, 소명서,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

■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절차



■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(재심의)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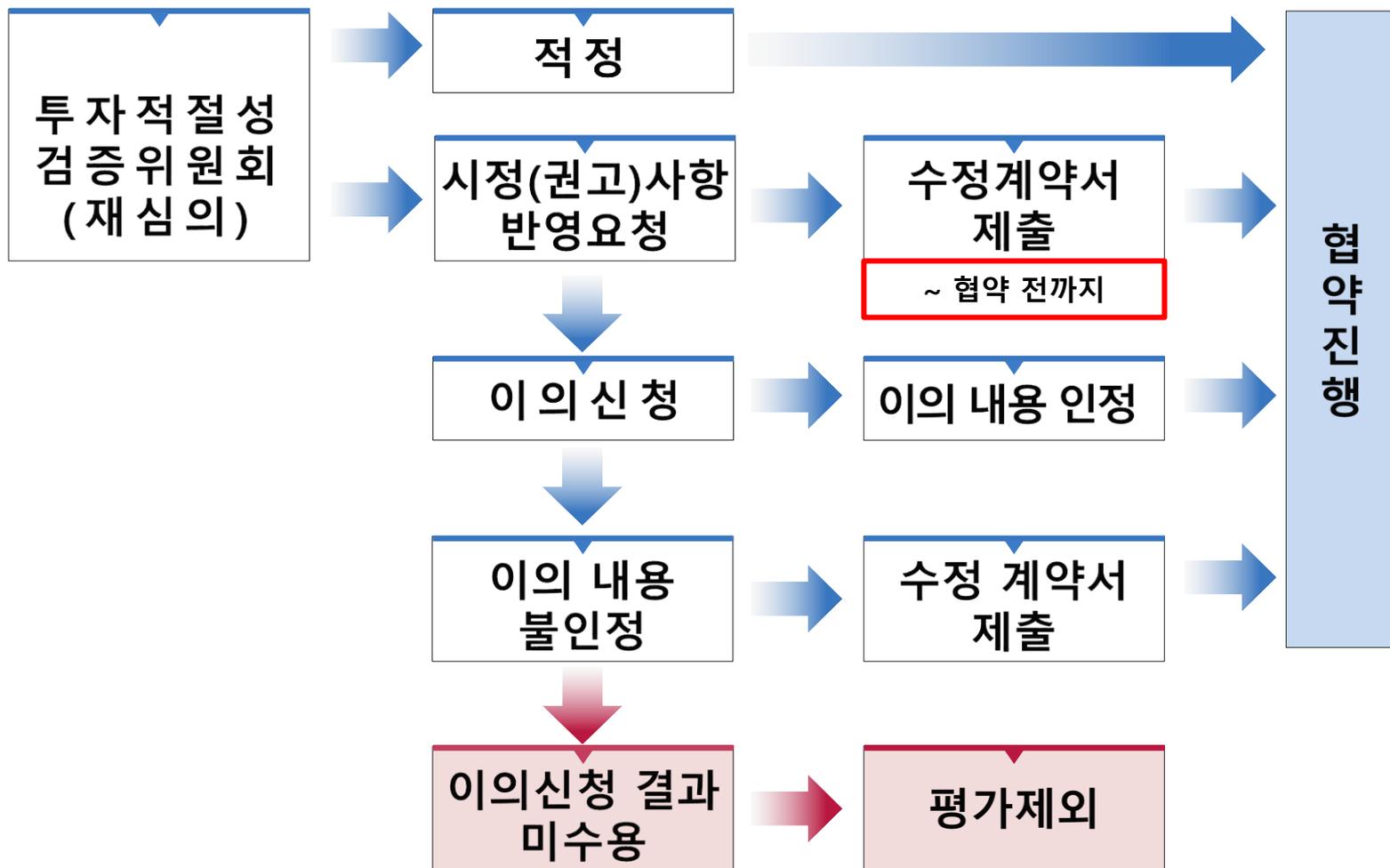
✓ 목적

- 운영사와 주관기관이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, 해당 기업이 선정되면 투자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절차를 준용하여 검증

✓ 개요

- 제출한 투자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 필수
 - * 체결된 투자계약서와 매칭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 동의 및 확약서 추가 제출 필요
-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 및 조건이 운영사와 창업기업의 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함
 - * 투자계약서 제출시 '공문'제출 필수

■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(재심의) 절차



2. 투자의 절차



*본 내용은 팁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창업기업 모집 및 발굴

- 운영사는 자체 공고, 경진대회, 네트워크, 이메일 접수 등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 모집·발굴 가능
- 창업기업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

✓ 투자협상

- 창업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의 운영사와 투자 협상 가능
- 창업기업은 투자협상 시 운영사에게 관계사 현황, 특수관계인, 채무현황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황에 대하여 고지 필요
- 운영사는 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창업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협상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운영사와 창업기업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·무형적 서비스*, 팁스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사의 가치기여 등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지분율 협상 시 반영 가능
(다만, 이 경우 운영사는 협상과정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문서화(투자검토보고서, 투자계약 동의서 등)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)

* 멘토링, 장비제공·공동개발 등 기술지원, 후속투자유치, 네트워크 활용 등

*본 내용은 팁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투자계약

- 운영사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가 확정된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운영방안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함(이 때, 투자계약서의 경우 팁스 서식 준용 가능)
- 체결된 투자계약서(또는 투자확약서)의 사실에 대하여 상호간 인지여부를 인정하는 투자계약동의 및 확약서를 창업기업 추천 시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운영사가 운영기관으로 창업기업을 팁스 추천하기 전까지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여 투자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음(단, 해당 추천 창업기업이 팁스에 최종 선정이 된 후 투자계약은 제출된 투자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해야함)
-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 및 조건이 운영사와 창업기업의 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운영사는 운영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, 운영기관은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
-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된 창업기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귀책대상에게 창업기업 추천권 축소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3. 투자자의 기본원칙



투자의 기본 원칙

*본 내용은 틱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투자의 형태

-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틱스에 추천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반드시 **신주투자**이어야 함
- 창업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불가피하게 **구주투자가 동반되는 경우** **구주투자에 따른 운영사의 투자금은 틱스의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 불가**
- 운영사 투자에 따른 주식의 형태는 **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을 원칙으로 함.**
다만, 특수한 경우*에는 별도의 방식도 가능하되, 이 경우 운영사는 창업기업에게 과도한 전환권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.
* 창업기업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기업가치 산정을 후속투자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 등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(일반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이 보유한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, 창업기업과 공동개발 또는 육성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승인을 통해 해당 행위의 현금적 가치를 산출하여 아래의 호와 같이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① **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**
 - ② **기술이전, 인력투입, 장비 지원과 같은 무형적 현물자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약서, 업무계약서 등과 같이 서류로 지원영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적 가치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환산된 가치의 최대 30% 이내에서 투자금으로 인정**

*본 내용은 팀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지분율

- **창업기업의 지분율**은 경영권 보장, 후속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원을 포함하여 **60% 이상**이어야 함(접수마감일 기준)
 - ① 창업자(대표자)
 - ② 공동창업자 및 소속직원
 - ③ 상근직은 아니나, 창업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의 핵심기술 또는 경영상 필수적 능력을 보유하고, 창업기업 활동에 참여도가 매우 높은 자(연구개발계획서에 역할 명시 필요)

- **운영사의 지분율**은 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**30% 이하**까지만 가능

4. 투자자의 세부내용



*본 내용은 틱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운영사의 주식처분

- 운영사는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각 불가
단, 아래의 경우 예외로 허용 가능
 - ① 창업기업이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
(다만, 인수합병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틱스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불가)
 - ② 창업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창업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
 - ③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
(다만, 이 경우 운영사의 주식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)
 - ④ 운영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이 틱스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- 창업기업은 운영사가 타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여도 기업매각 등으로 주식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사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

*본 내용은 틱스 총괄운영지침 내 <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>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✓ 이해관계인의 책임

- 창업기업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운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
-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*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연대보증 및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
 - *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주의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불이행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및 거짓보고 등
-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을 창업기업 대표(또는 공동대표) 등 최소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✓ 상환권

- 운영사는 종류주식의 상환권을 주식 발행 후 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 이후부터 행사 가능



감사합니다

www.jointips.or.kr

T

I

P

S

TECH
INCUBATOR
PROGRAM
FOR STARTUP